

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

부산직할시남구의회위원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 제2항 제2호 가목 "(사회, 가정복지, 환경보호, 위생, 지역경제)"를 "(사회, 가정복지, 환경보호, 청소, 위생, 지역경제)"로 한다.
동조 제2항 제4호 나목 "의회사무과"를 "의회사무국"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조 문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생 략)</p> <p>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총무위원회 가. (생 략) 2. 사회산업위원회 가.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<u>(사회, 가정복지, 환경보호, 위생, 지역경제)</u> 나. (생 략) 3. 도시위원회 가. (생 략) 4. 의회운영위원회 가.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. <u>의회사무과</u>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. (생 략) 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_____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_____ 가. (현행과 같음) 2. _____ 가. _____ <u>(사회, 가정복지, 환경보호, 청소, 위생, 지역경제)</u> 나. (현행과 같음) 3. _____ 가. (현행과 같음) 4. _____ 가. _____ 나. <u>의회사무국</u> _____ 다. (현행과 같음)